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4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인근 시·군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 등을 인상(안 제4조)

- 참전명예수당 “월 4만원”을 “**월 5만원**”으로 인상
- 유공자 사망위로금 “20만원”을 “**30만원**”으로 인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6조 제1항, 제9조제5항

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와 합의 후 예산반영예정

다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14.10.17~11.5(20일간)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 중 “지방보훈처장”을 “지방보훈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4만원”을 “5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0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지방보훈처장이 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.	제3조(지원대상자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 ---- 지방보훈청장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원사업) 성주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제3조의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(지원사업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참전명예수당(이하 ‘수당’이라 한다) 월 4만원 지급	1. ---------- ------ 5만원 ---
2. 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	2. ---------- 30만원 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